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3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서명옥ㆍ서천호ㆍ박준태

진종오 • 김상훈 • 배준영

김예지 · 김용태 · 고동진
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,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 해야함.

반면, 영국은 항암제기금(Cancer Drug Fund, CDF)과 희귀의약품기금(Innovative Medicine Fund, IMF)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%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.

이에 대한민국도 '암관리기금'을 신설하여 암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,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 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장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23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.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"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(이하 "국민건강증진기금"이라 한다)에서"를 "제45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서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"를 "제45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서"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"를 "제45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서"로 한다.

제3장의2(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의2 암관리기금

제45조의2(기금의 설치) 정부는 암검진,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,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45조의3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출연금

- 2. 다른 회계 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,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 따른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- 3. 기금운용 수익금 등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제45조의4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,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암검진사업의 지원
 - 2.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
 - 3. 암의 발생·예방·진단·치료·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
 - 4.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
 - 5.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, 지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

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- ③ 기금의 운용・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6(기금의 회계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장수관·기금재무관·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,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정수관·기금 재무관·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수입담당임원·기금 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·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,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암검진사업) ① ~ ③ (생	제11조(암검진사업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	4
받는 사람 중 「의료급여법」	
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	
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	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	제45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
민건강증진기금(이하 "국민건	<u>서</u>
<u>강증진기금"이라 한다)에서</u> 그	
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	
할 수 있다.	
제13조(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	제13조(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
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	업 등) ①
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	
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	
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	
<u>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</u> 지원할	제45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
수 있다.	<u>처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7조(출연 또는 보조) ① 정부	제37조(출연 또는 보조) ①
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	
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<u>국</u>	<u>ম</u>]4 <u>5</u>

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서--보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 제3장의2 암관리기금

제45조의2(기금의 설치) 정부는 암검진,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,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 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45조의3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.

- 1. 정부출연금
- 2. 다른 회계 또는 「국민건강 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 진기금, 「복권 및 복권기금 법」에 따른 복권기금 등 다 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- 3. 기금운용 수익금 등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

제45조의4(기금의 용도)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, 보조

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 1. 암검진사업의 지원

- 2.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
- 3. 암의 발생·예방·진단·치 료·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 에 관한 연구
- 4. 암의 예방·진단 및 치료 등 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 급
- 5.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, 지급방법,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45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·관리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・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・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

<u><신 설></u>

<신 <u>설></u>

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- ③ 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45조의6(기금의 회계기관) ①
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
 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
 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
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・기금
 재무관・기금지출관 및 기금출
 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 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•기금재무관•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수입담

당임원·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·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,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.